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2026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(방문형)



목 차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0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·신고
0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
03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
04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
05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
06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
07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08.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
09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
10.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

목 차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·통보·관리
12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
13.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
14. 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
15. 급여비용 산정 기준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
16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제도
17. 2026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
18.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

참고자료. 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

0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· 신고



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·신고 ... 기관관리부 3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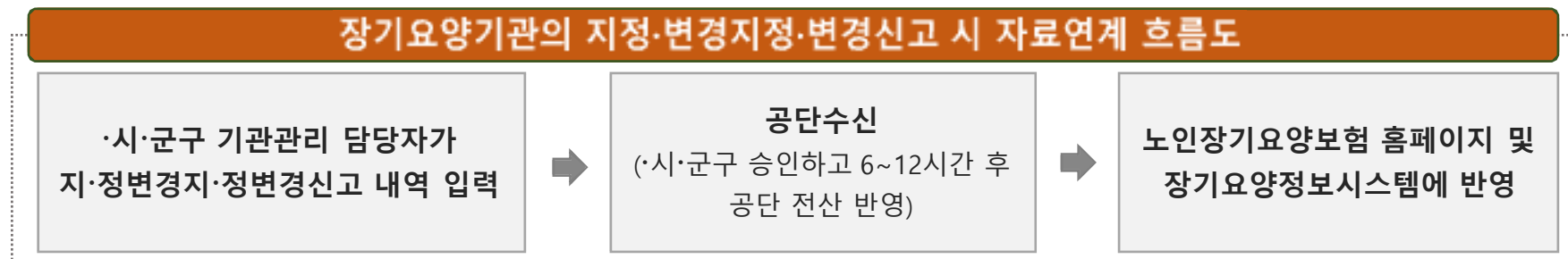
◆ 목적

-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의 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반영을 통해 기관 지원 등 안정적인 장기요양제도 운영 기반 조성

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(장기요양기관의 시설·인력에 관한 변경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5조(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)

◆ 자료 연계 흐름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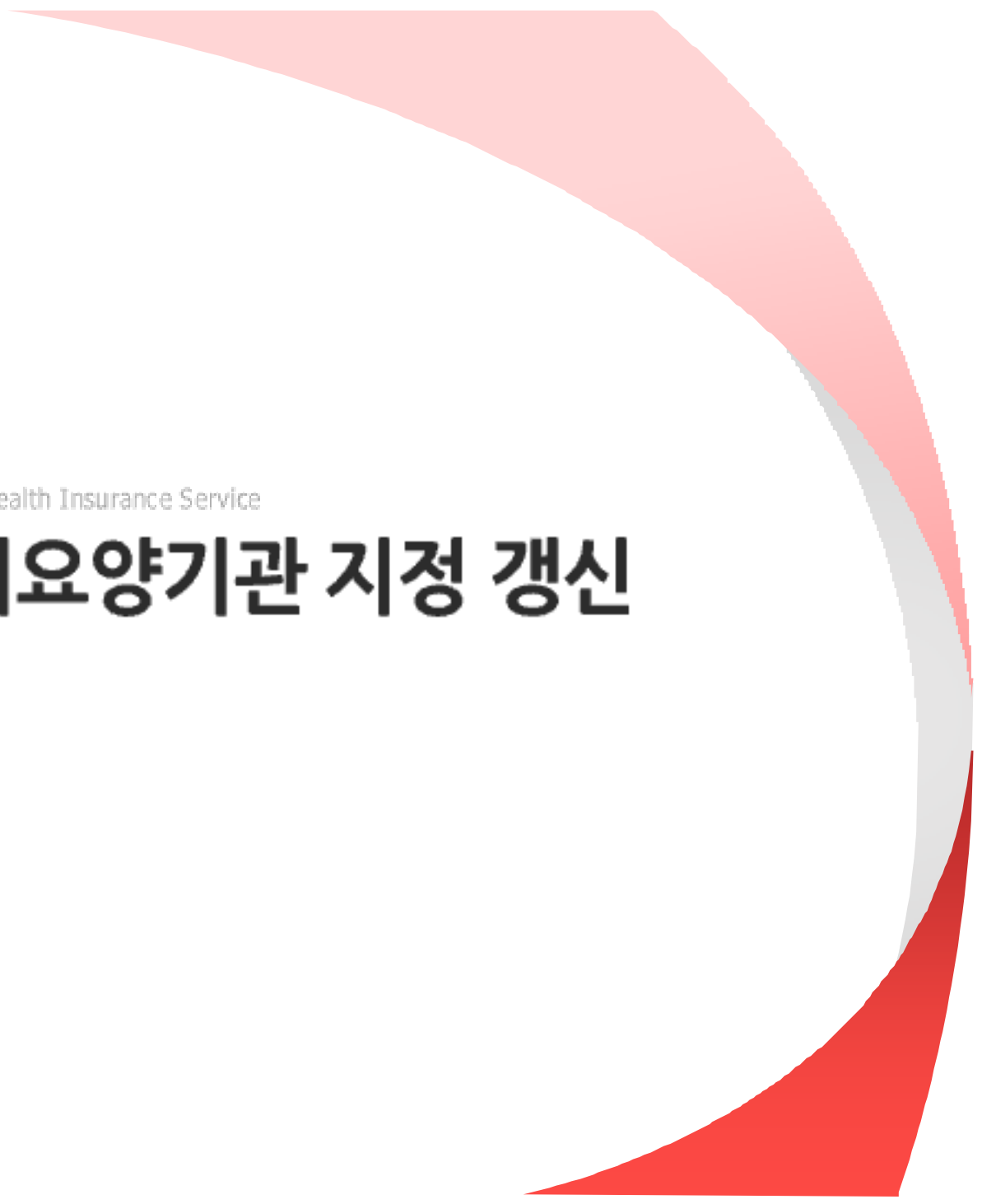
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· 신고 ... 기관관리부 3팀

◆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 지정	변경 신고	기타사항 등
변경 사항	· 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·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	· 기관의 명칭·소재지 · 기관의 법인 대표자 · 기관의 입소(이용)정원	· 대표자 연락처 · 기관 팩스번호 · 기관 전화번호 등
접수처	신고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·군·구		
구비 서류	·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·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· 인력(시설) 변경 현황, 면허증, 자격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	·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·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·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(정원 변경 시)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(법인 대표자 변경 시)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	·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(지자체 별 구비서류 상이)

◆ 기타사항

-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지정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,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·군·구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
- 재난(응급)상황 대응 및 기관 지원 등 지자체 및 공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**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변경 요청**



0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



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...기관관리부 3팀

◆ 추진배경

-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최초 지정 이후 **매 6년마다** 갱신 심사를 받도록 제도 도입('19.12월)
※'25.12.부터 최초 시행

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)



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...기관관리부 3팀

◆ 지정갱신 개요

- 유효기간(6년)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**장기요양기관*의 장**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
 - *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시설급여,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
- (신청접수 기간) **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**
- (접수처)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**시·군·구**
- (제출서류)
 - 장기요양기관 지정(갱신) 신청서 1부
 -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부
 -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부



0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



3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… 기관관리부 4팀

◆ 추진목적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 정보게시를 통한 수급자 알 권리 강화 및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

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9조(과태료) 제1항제2의2호: 500만원 이하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[별표3]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



3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... 기관관리부 4팀

◆ 주요내용

●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화면 안내

-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➔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관포털) ➔ 영양자원 ➔ 장기요양기관 관리 ➔ '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' 화면 내 각 탭별* 해당사항 입력

* (기본정보/정원·현원/비급여항목/프로그램운영/기타준수사항/CCTV 설치 현황/사진/공지사항/게시판)탭으로 분류



● 급여종류별 게시항목

급여종류(4종)	게시항목
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	① 기본정보 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 ※ 홈페이지 주소, 주차시설 등 기재사항 없을 시 공란이 아닌 '없음'으로 필수입력 ② 보험가입여부 (손해배상책임보험*, 전문인배상 책임보험(복지용구 제외)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※ 공지사항 탭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뒤 게시 여부 'Y'로 체크 ④ 사진
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제1항 관련,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'1' 또는 '2'로 시작하는 기관만 정보게시 대상



3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... 기관관리부 4팀

◆ 정보게시 주기

- 홈페이지 회원가입 '즉시' 기관 정보 게시
- 게시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'즉시'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◆ 정보게시 매뉴얼

- 정보게시 관련 전산 매뉴얼 확인 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-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 > 제목 '화면 정보게시 매뉴얼' 검색



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



4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 ... 기관관리부 4팀

◆ 「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」

- (대상) 장기요양기관,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 의무자
- (방법) 직장(자체)·방문·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

◆ 「인권교육」

- (대상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 전체
※ 장기요양기관(시설, 재가)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 교육 대상
- (방법) 대면 또는 비대면(인터넷 교육 등)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
- (제공기관)
 - 노인보호전문기관: <https://noinedu.or.kr/> 또는 02)3667-1389
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: <https://in.kohi.or.kr/> 또는 1600-8810



4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 ... 기관관리부 4팀

◆ 노인학대 신고의무 ...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6

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

신고의 의무

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
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

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

교육의 의무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◆ 노인학대 신고 전화: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, 수사기관(112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◆ 노인학대 신고 앱: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기본, 위치기반 도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앱 소개

신고자의 신분을 보장 (최소한의 정보: 핸드폰 번호)
위치기반의 도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
다운로드 아이콘

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
앱스토어 다운로드

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
구글플레이 다운로드





0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



5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◆ 추진목적

-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처우개선 도모

◆ 개요

- (근거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 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제6항,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 (예산의 편성 및 제출) 등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
- (대상) 전체 장기요양기관
- (방법)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 공단 제출(매월 전자문서교환방식)

◆ 주요내용

- (인건비)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,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(시간외수당, 야간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*), 장기근속장려금, 사회보험기관부담금, 퇴직적립금 등
 - * 기타수당: 명절수당, 가족수당, 성과상여금, 정액급식비, 교통비(고시 제 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하고, 교통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사는 수급자의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)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
- (인건비지출내역 신고)
 - 장기요양기관이 기관포털 전산화면에서 급여유형별로 '인건비'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직종별 합산하여 입력



5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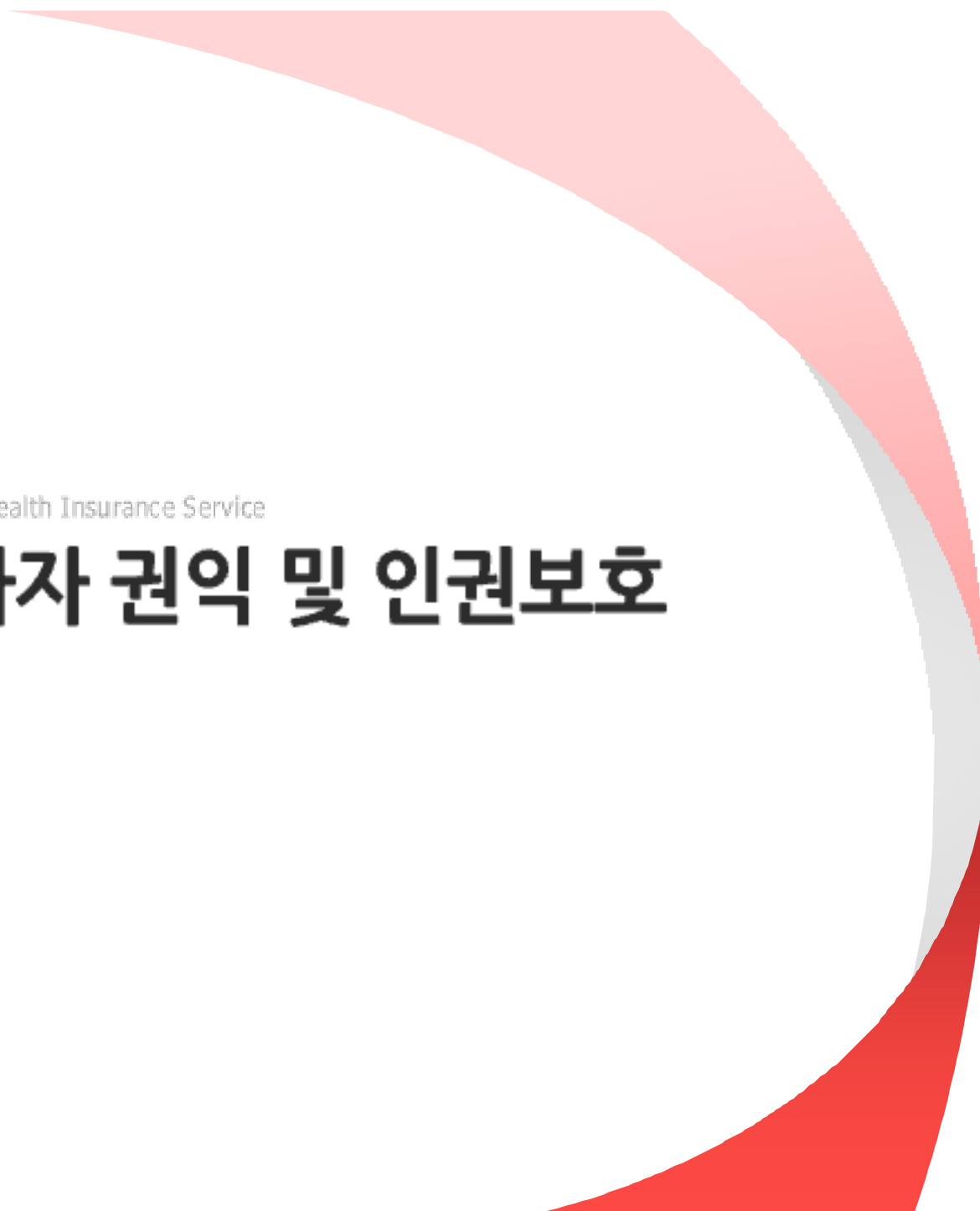
◆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

구분	장기요양요원	인건비 지출비율
노인요양시설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62.6%
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*, 요양보호사 *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	65.2%
주야간보호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48.6%
단기보호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58.9%
방문요양	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* * 사회복지사, 가산을 받는 간호(조무)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포함 가산인정 인원수 만큼 인정	87.0%
방문목욕	요양보호사	49.7%
방문간호	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	60.2%

※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**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제출**

●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

- 조리원, 영양사, 위생원의 장기근속장려금, 주야간보호 조리원 배치 가산금
- 각종 한시적 지원금(검체 채취 지원금, 감염예방수당, 특장차량지원금 등)



0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



6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◆ 안내사항

-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및 수급자(보호자)·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「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」, 「상호협력동의서」 적극 활용
-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,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「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」 적극 활용

제목	주요내용	게시위치
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권침해유형 ·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·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· 장기요양요원보호 관련 법령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→ 알림자료실 → 알림방 → 공지사항 (제목 검색: "인권") · 장기요양기관 포털 → 기타 → 게시판 공지사항 (게시글 검색: "인권")
상호협력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요양요원 및 수급자의 상호 인권 존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→ 알림자료실 → 알림방 → 공지사항 (제목 검색: "표준근로계약서")
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,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요양기관 포털 → 기타 → 게시판 공지사항 (게시글 검색: "표준근로계약서")



6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◆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(대표자, 시설장 상담 제외)

● (1차)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화(상시운영)

- (상담내용) 업무 고충상담, 성희롱 상담, 노동 상담 등
- (전화번호) 033-811-2282

● (2차) 공인노무사 전문상담

- (운영기간) 2026.1.21. ~ 12. 23.
- (상담내용)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재, 직장내 성희롱, 인사노무 고충 등
- (운영방법)
 - (유선) ☎ 010-2753-2338 ... 매주 수요일(10:00~12:00)
 - (이메일) cplaforyou@naver.com ... 상시운영
 - (오픈채팅) 카카오톡-오픈채팅-검색-'민노무사' 검색 후 1:1채팅 ... 상시운영



0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

7. 영양보호사 보수교육… 종사자관리부 2팀

◆ 추진 목적

- 영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
◆ 관련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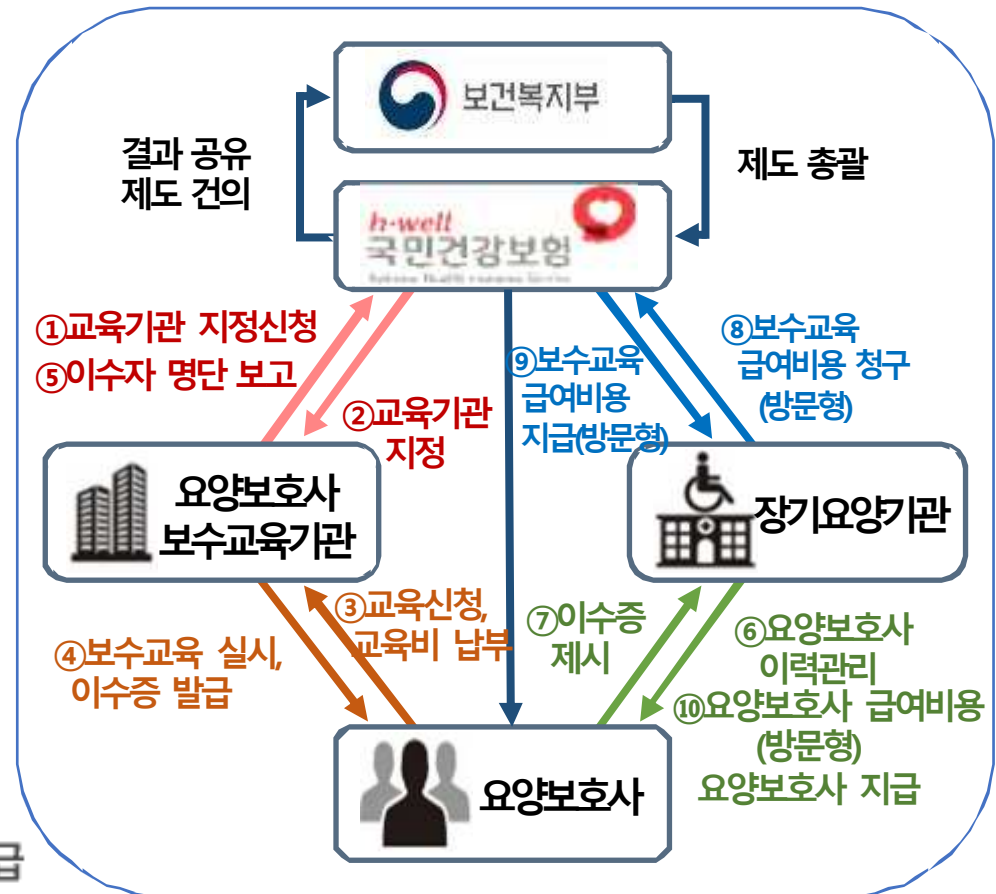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영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(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(영양보호사 보수교육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



7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… 종사자관리부 2팀

◆ 운영 체계도

-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
- ② 교육기관 지정
- ③ 교육신청, 교육비 납부
- ④ 보수교육 실시, 이수증 발급
- 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
- ⑥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이력관리
- ⑦ 이수증 제시
- ⑧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청구
- ⑨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지급
- ⑩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요양보호사 지급





7. 영양보호사 보수교육… 종사자관리부 2팀

◆ 보수교육 개요

- 2026년도 보수교육 시작일: 2026. 1. 1. ~ 계속
- 대상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영양보호사 (출생연도 기준 매2년마다 1회, 2026년은 짝수연도생)
- 교육 주기: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 교육
- 교육시간 및 방법: 대면(8h) 또는 온라인(4h) ⊕ 대면(4h)
* 온라인 ⊕ 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(4시간) 먼저 수강 권고
- 교육과정: 4개 필수 영역 (★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이수해야 인정)
 - 가 영역(영양보호와 인권), 나 영역(노화와 건강증진), 다 영역(영양보호와 생활지원), 라 영역(상황별 영양보호기술)
 - 온라인+대면교육 병행하는 경우, '가·나 영역'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므로 '다·라 영역'은 반드시 대면교육
- 교육비용: 대면(8h) 36,000원 / 온라인(4h)(12,000원) ⊕ 대면(4h)(18,000원)

👉 교육기관 찾기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민원서비스 > 검색서비스 > [영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](#)

- (대면교육기관) 교육제공방법에서 '대면' 클릭, 지역은 '시·군·구'로 검색
- (온라인교육기관) 교육제공방법에서 '온라인' 클릭, 지역은 '전체'로 검색

👉 영양보호사 직접 보수교육실시기관에 신청. 필요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 단체신청 가능



7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… 종사자관리부 2팀

◆ 방문형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신청 방법

- (대상) **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**
 ※ 교육 이수월에 입소형*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,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비용청구 대상에서 제외
 * 주·야간보호,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
- (산정기준) **대면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에 1회**
 - 대면(8h) 95,000원, 대면(4h) 47,500
- (신청방법)
 - (요양보호사) 교육 이수 당시 근무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'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' 제시
 ※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더라도 1개소에만 원본 제시, 부당 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
 - (장기요양기관) 이수증 확인(사본 3년 보관) 후 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,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
- **청구 기간: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 (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청구 가능)**
- **지급시기: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**

5월	6월	7월	8월
(요양보호사) 교육 이수	(교육기관) 이수결과 보고	(장기요양기관) 비용 청구	(공단) 비용 지급

보수교육 이수한 달(5월)로부터 지급(8월)까지 최소 3개월



0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



8.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… 요양급여개발부 1,2,3,4팀

◆ 추진목적

-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의료·요양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

◆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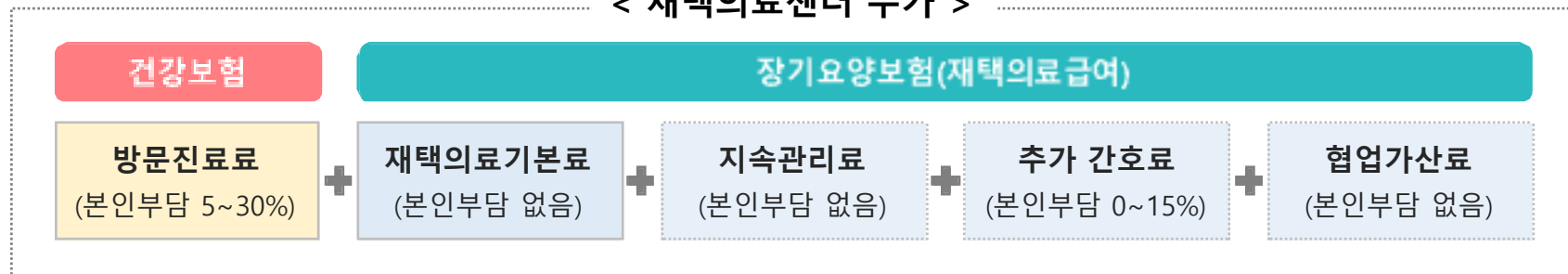
- (사업기간) 2026년 1월 ~ 12월(1년)
- (참여기관) 의원급 의료기관 등* 보건복지부 지정 422개소(전국 229개 시군구) … '26.2.13.기준
 - * 의료기관((한)의원·병원), 보건의료기관(지방의료원·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)
 - (전담형) (한)의원, 병원, 지방의료원, 보건소 등 소속 (한)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로 재택의료팀 단독 운영
 - (협업형) (한)의원·병원 소속 (한)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, 사회복지사로 재택의료팀 협업 운영
- (이용대상)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이면서 거동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(한)의사가 판단한 사람
- (제공내용) 수급자 가정을 다학제 팀이 방문하여 포괄평가·케어플랜 작성 후 정기적 방문의료,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
 - (한)의사는 월 1회 이상,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
 - 사회복지사는 매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영양·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



8.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... 요양급여개발부 1,2,3,4팀

◆ 급여비용 ... 건강보험+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

< 재택의료센터 수가 >



● (재택의료급여) 재택의료팀 운영, 의료·요양 통합 사례관리 제공 시 산정

- (재택의료기본료) 140,000원, 수급자당 필수 방문의료(한의사 월 1회, 간호사 월 2회) 및 상담 요건 충족 시
- (지속관리료) 60,000원, 수급자당 6개월 간 연속적으로 재택의료기본료 산정기준 충족 시
- (추가간호료) 53,770원, 월 기본 방문간호(월 2회)를 초과하여 방문간호 제공 시(월 최대 3회)
 - (원칙)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제공 원칙
 - (예외) 수급자 거주 지역에 방문간호기관이 없거나 연계가 곤란한 경우 재택의료센터에서 직접 제공 가능
- ※ 추가간호료는 본인부담금 있으며, 수급자 자격별로 차등 적용(0~15%, 재가급여 본인부담율과 동일)
- (협업가산료) 20,000원, 수급자당 재택의료기본료 산정기준 충족 시



8.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... 요양급여개발부 1,2,3,4팀

◆ 급여비용 ... 건강보험+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

● (방문진료료) (한)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시 산정 ..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

- (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) '일차의료 (한의)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' 지침 적용

'26년 기준(단위: 원)

급여 구분	수가명	급여비용(간호사동행)		산정기준
		의원급	병원	
방문진료료	방문진료료 I	131,720 (165,240)	140,600 (169,990)	재료비 등 별도 행위 산정 불가
	방문진료료 II	91,630 (125,160)	97,080 (126,470)	재료비 등 별도 행위 산정 가능
	한의 방문진료료	108,260	해당없음	재료비 등 별도 행위 산정 불가

- (방문진료 시범사업 미참여) 보건의료기관의 방문진료료는 개별 산정지침 적용

· (보건소, 보건지소) 「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」의 '보건기관의 진료수가'

· (보건의료원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」의 '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'

- (본인부담)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(5~30%)되며, 방문진료료 및 비급여 등 기타 자세한 비용 상담은 해당 지역 재택의료센터로 문의



8.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... 요양급여개발부 1,2,3,4팀

◆ 급여비용 산정지침 관련 주요사항(재택의료급여 산정불가)

- 재택의료팀 인력이 다른 재택의료센터에 등록, **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의 시설장(관리책임자)으로 신고된 경우**
- 재택의료급여와 다른 사업을 중복 이용한 경우

- 1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」에 따른 **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**
- 2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**방문간호와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**
- 3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에 따른 **사회복지사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시간에 재택의료팀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경우**
- 4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에 따른 **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또는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(한)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 방문한 경우**
- 5) 「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」 및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」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**(한)의사, 간호사 중 1명 이상 방문한 경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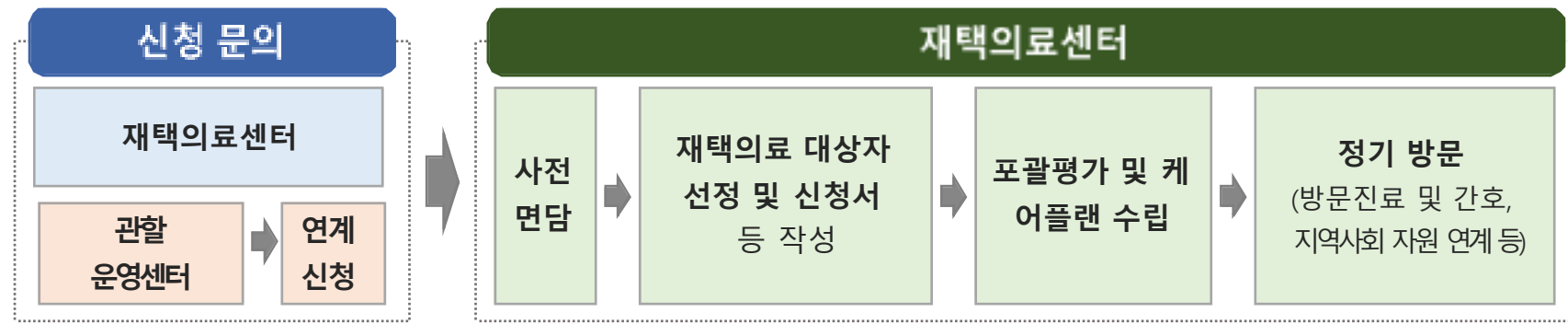
◆ 재택의료센터 및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

-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개인정보 취득 또는 유출 시 **(예:재택의료센터 ↔ 장기요양기관 간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등)**
⇒ **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중단 조치 및 지정 취소 가능**



8.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... 요양급여개발부 1,2,3,4팀

◆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



◆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찾기
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
 - ▶ 건강모아 > 기관 찾기 > 병(의)원/검진기관 찾기 > 특성별 기관찾기 >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
- '건강보험 25시' 모바일 앱
 - ▶ 건강모아 > 병(의)원/검진기관 찾기 > 병(의)원 찾기 > 특성병원 >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



0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



9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… 급여이용기반부 1팀

◆ 추진배경

-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, 재가급여 대부분은 1~2종*의 급여만 제공
 - 수급자는 단일급여 이용에 익숙하고, 특히 가사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
- * 재가수급자 79.6%는 1종 급여만 이용, 그 중 59.0%가 방문요양 이용('24.12.기준)

◆ 목적

-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가서비스 본 사업 실시('25.3월~)
 -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조정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필요

◆ 추진경과

-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등 검증을 위해 '16.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
- '21.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 단계로 예비사업II 추진(~'25.2.28.)
-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개정
 -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제3·4항 신설('24.1.2.개정, '25.1.3.시행)
 -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운영기준 등) 신설('25.2.28.시행)
-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실시('25.3월~) : 총 233개소('26.1.8.기준) … 가정방문형 134개소, 주야간보호형 99개소
-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로 전환('26.2.11.~)



9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... 급여이용기반부 1팀

◆ 사업내용

● 통합재가서비스란?

- 하나의 기관(주·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)에서 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(주·야간보호,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목욕)를 전문인력(간호사·간호조무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)이 복합적으로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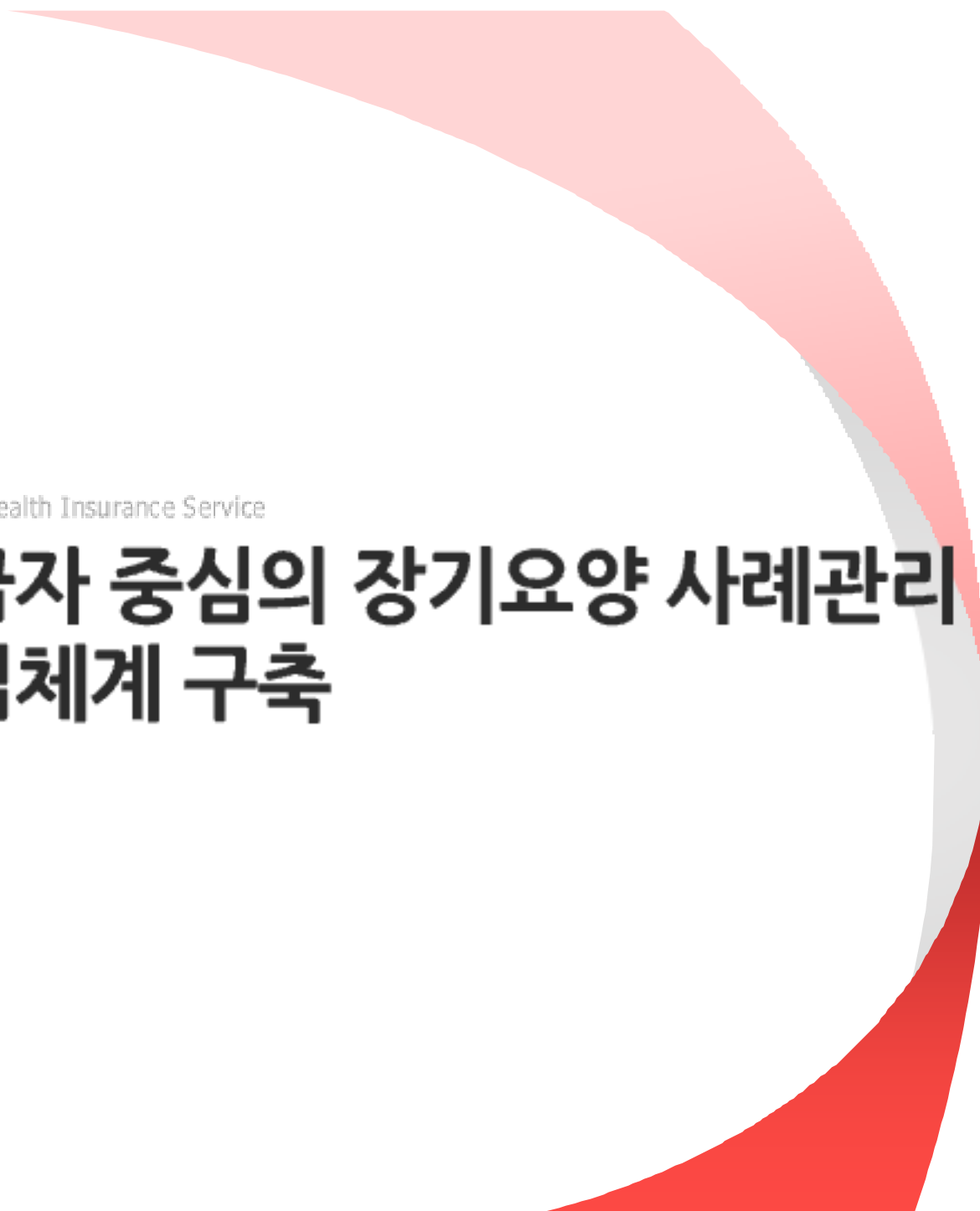


9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... 급여이용기반부 1팀

◆ 사업내용

● 통합재가서비스 주요내용

- (사업대상)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 중 이용 희망자
 - ※ (제외)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 제공받는 자,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
- (제공기관) 하나의 기관기호로 ①방문간호⊕방문요양, ②주·야간보호⊕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, 시설·인력기준등을 충족하여 '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공모'를 통해 선정된 기관
- (서비스 내용)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·상태를 반영하여,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
 - ① 가정방문형: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 - ② 주·야간보호형: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- (급여비용)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또는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지급
 - ① 가정방문형: 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 110%까지 추가 산정
 - 방문간호 월2회 이상, 방문요양 월4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 - ② 주·야간보호형: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-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 월1회 이상, 방문요양 월1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


1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
협업체계 구축



10.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...급여이용지원부 3팀

◆ 추진 배경 및 목적

●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'23~'27)에 따른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

-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





10.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...급여이용지원부 3팀

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) 제3항
 - 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)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7조(장기요양급여의제공) 및 제48조(관리운영기관 등)
-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‘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’
 - (목표)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
 - (주요과제) 2. “빈틈없이 지원하는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(재가급여 제공기준),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기준)



10.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...급여이용지원부 3팀

◆ 주요내용

-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
 - (공단)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 적정 급여 점검, 기관 사례관리 협업, 사례회의 참여 등
 - (장기요양기관) 사례관리자로서 장기요양 수급자 욕구조사, 급여제공계획 수립, 급여관리업무, 기관 사례회의 등 수행
 - (지자체) 복지자원 총괄자로서, 의료·돌봄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원연계,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 운영
- 교육자료 (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장기요양기관 > 종사자 마당 > 기관종사자 교육코너, 기관포털 급여계약통보서 자료실)
 -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(e-book)
 - 2026년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가이드북
 - 욕구조사기록지 작성매뉴얼, 급여제공관리 서식 모음 (제목: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사용자 전산매뉴얼 및 Q&A게시 안내)



1 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·통보·관리

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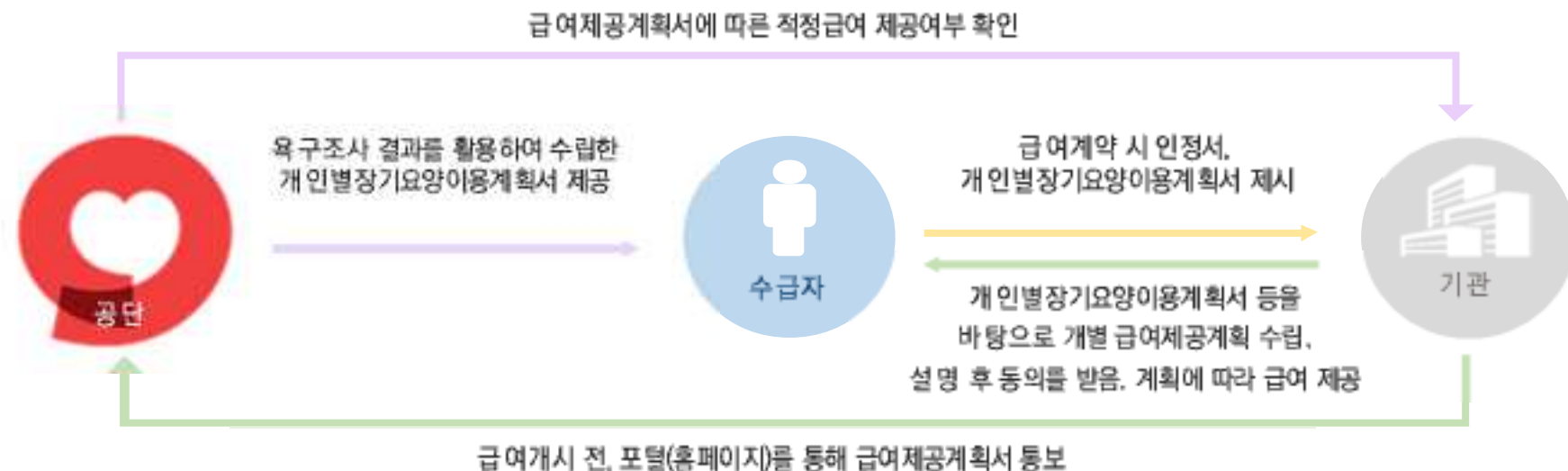
◆ 목적

-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제공계획 수립·통보·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이용 지원
 - ※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등에 따라 "급여제공시작 전에" 제공계획을 수립,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공단에 통보 해야 함

◆ 급여제공계획 업무 흐름도

● 주요내용

- (대상)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 제외)
- (전산경로)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/급여계약통보서/급여제공계획서
 - ※ 참고자료: 급여계약통보서 > 게시판 > 자료실 > [공지]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



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◆ 급여제공계획서 작성내용

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(출력용)

급여제공계획서 번호 :

수급자 성명	생년월일	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번호
장기요양 등급	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	장기요양인정번호	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

장기요양 급여종류	장기요양 급여계약일	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	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	작성일
			급여제공계획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	작성한 날짜

목적: **서비스를 제공하여 얻고자 하는 종합효과(장기적, 포괄적)**

세부제공내용의 소요 시간
 * 1일 다 횟수 서비스의 경우 1회당 소요 시간 기재

급여종류	장기요양 필요영역	장기요양 세부목표	장기요양 필요내용	세부제공 내용	횟수 (주기/회)	시간 (분)	작성자
	급여제공에 필요한 영역 ex) 신체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	세부제공내용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 (단기적, 구체적) ▶수급자를 중심으로	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	수급자가 제공받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			

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자의 주된 욕구 및 서비스 요구사항 등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작성된 사유(급여종류, 필요내용 등) -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점
	<p>총괄확인자: 급여제공계획서의 총괄 관리자 (모니터링 역할 수행자) (서명 또는 인)</p>

위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 전화번호 : 동의자 **급여제공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** (수급자와의 관계) (서명 또는 인)

작성내용 설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 • 적용기간은 해당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이내에 속해야 하며, 계약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기간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. 급여제공계획 적용 시작일자가 작성일자 또는 최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출력일자보다 빠른 경우 등록 불가. • 적용기간 시작일자 :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보다 이전 날짜로 입력 불가 (급여개시 전 작성·통보) • 적용기간 종료일자 : 급여제공계획서 시작일로부터 다음 외제연도까지 작성 가능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일	•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날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목적	•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고자 하는 종합효과(장기적, 포괄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기요양 필요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제공에 필요한 영역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체활동지원</td> <td rowspan="3"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인지활동지원</td> </tr> <tr> <td>인간관계지원</td> </tr> <tr> <td>정서지원</td> <td>방문요양</td> </tr> <tr> <td>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</td> <td>방문요양</td> </tr> <tr> <td>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</td> <td>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</td> <td>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</td> </tr> <tr> <td>개인활동지원</td> <td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지역자원연계</td> <td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전문목욕</td> <td>방문목욕</td> </tr> <tr> <td>건강관리</td> <td>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간호처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능회복훈련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응급지원</td> <td>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생활 및 환경지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체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인지활동지원	인간관계지원	정서지원	방문요양	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	방문요양	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	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	개인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지역자원연계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전문목욕	방문목욕	건강관리	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간호처치		기능회복훈련		응급지원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생활 및 환경지원	
신체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지활동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간관계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서지원	방문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	방문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	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역자원연계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목욕	방문목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강관리	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간호처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능회복훈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응급지원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활 및 환경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기요양급여(세부제공내용)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단기적·구체적 목표 설정 •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가 얻을 수 있는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(수급자 중심 목표설정) - ex) 요실금 실수 예방을 위해 도움을 준다(공급자, 제공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부적합) - 배뇨도움을 받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(수급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적정) • 수급자의 개별 욕구 및 가능 상태를 고려하여 수립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필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됨 ... 수급자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여 기본 제시된 항목 외 추가로 작성 가능 • 수급자의 기능상태·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 작성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제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요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 (필요내용에 따라 자동연계) - (필요내용) 온 입고 뒷정리하기 - (세부제공내용) 온 추스르기 등 뒷정리 도움 • 수급자의 기능상태·욕구 및 필요내용에 적합한 세부제공내용 작성 - 수급자 기능상태·욕구 반영한 실제 제공서비스 내용에 맞춘 세부제공내용 주기 작성 가능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 횟수 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제공 내용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기재 • 서비스의 내용별 제공 주기(일, 주, 월, 필요시)를 선택하여 작성 * 1일 다 횟수 서비스의 경우 1회당 소요 시간 기재 • 일 단위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으로,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적절한 주기를 선택하여 작성 • 고시 상 기준에 따른 급여종류별 적정 제공시간 작성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자의 주된 욕구·기능상태 기재 • 수급자의 상태 상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향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작성 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사유에 대한 기재 • 그 외 급여제공에 관한 전반적, 종합적인 사항 기재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괄확인자	• 급여제공계획서의 총괄 관리자(모니터링 역할 수행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의자	•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… 급여이용기반부 2팀

◆ 주요내용

-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(지체없이 재작성-설명·동의-통보)
 -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 -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)
 -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확인한 경우
 - 공단과의 사례회의 결과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욕구사정 결과 반영을 위해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급여제공모니터링(급여제공결과평가) 결과 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…30일 이내 평가준
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되고 수급자의 기능상태,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※ 단, 기능상태, 욕구, 서비스 내용 변경 이외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 하지 않음

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◆ 유의사항

- **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작성 및 통보불가**
 - ※ 단, 단기보호 급여종류 권고없이도 작성가능
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만 권고되어도 방문요양(장기요양가족휴가제) 작성가능
- 급여제공계획서에 작성하려고 하는 급여종류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맞지 않는 경우, 수급자 욕구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·발급받은 이후 출력일자 등록 가능

◆ 급여제공 모니터링(급여제공결과평가)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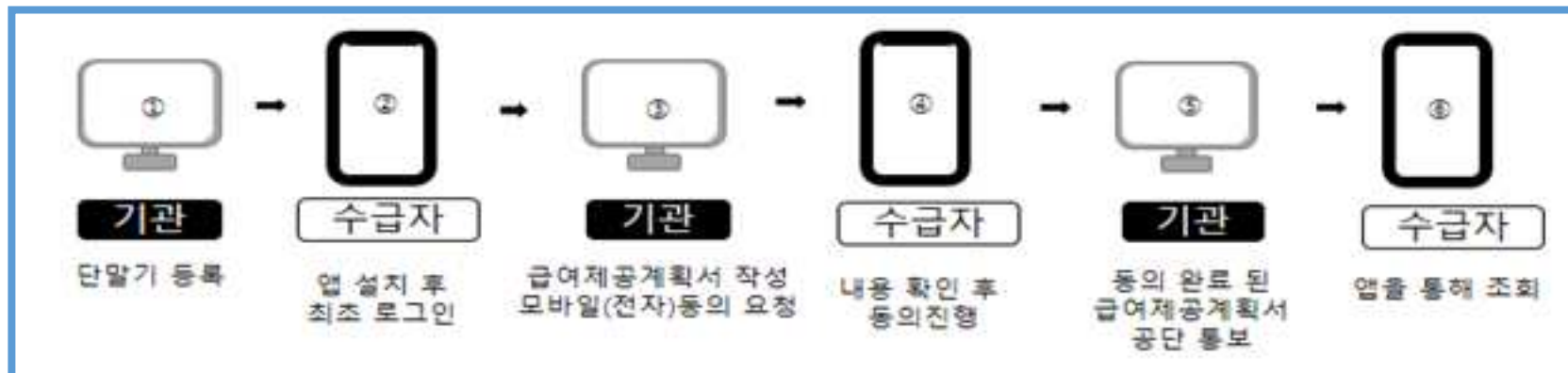
-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의 적정성과 목표달성 여부, 기능상태와 욕구변화 등을 확인(평가)하기 위해 실시
- 급여제공 모니터링 결과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필요시 재작성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 자체서식 활용 가능
 - ※ 화면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/급여계약통보서/급여제공모니터링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(종사자로그인)/급여제공관리/급여제공결과평가
...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만 사용가능



11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◆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[전자] 동의 방법 추가

-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수급자(가족) 동의
 - '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' 과 기관포털을 연동하여 사용('25.6.23. 신설)
 - ① 직접 동의 또는 ② 모바일(전자) 동의 중 선택하여 전산 등록
- 공단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모바일(전자) 동의 사용방법
 -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자(수급자 또는 가족) 1인 단말기 등록(PC) → 모바일 앱 설치 후 최초 로그인 → 모바일(전자)동의 요청 전송 → 앱을 통해 실시간 동의 → 공단 통보(PC)



● 다빈도 문의사항

Q. 급여제공계획서 전자서명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한가요?

A. 아닙니다. 현재 가정방문급여 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제공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전자서명 가능하며 직접동의 또는 전자동의 병행가능하고, 주간야간보호와 단기보호,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직접동의만 가능합니다.

- 참고자료:급여계약통보서 > 게시판 > 자료실 > [공지]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



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**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
전산 운영**



12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3팀

◆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이란?

-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급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관포털) 내 급여 제공 과정을 기록·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운영 체계

◆ 추진 배경 및 목적

● 배경

- 그동안 급여기록을 서면(또는 민간 프로그램)으로 작성하고, 청구자료만 다시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비효율적 구조 지속
- 수급자 중심의 적정 급여제공 필요성이 지속 증가

● 목적

- 급여기록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
- 적정 급여제공 체계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
- 종이 기록물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기록물 관리 관련한 행정 부담 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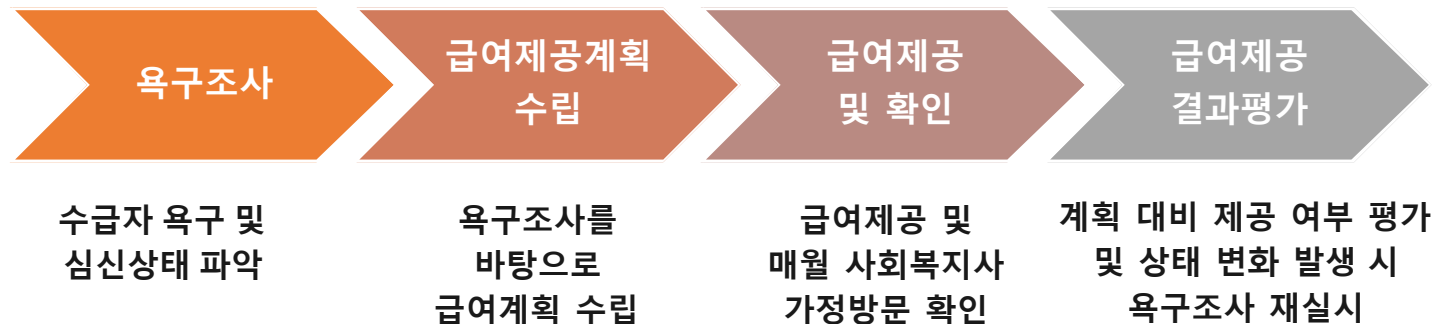
12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3팀

◆ 주요 내용

- (대상) 가정방문형 재가기관 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기관 약 1.8만 개소
- (개시) 2025. 6. 23. 부터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중
- (항목) 욕구조사기록지, 급여제공기록지,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*, 급여제공 결과평가 등의 급여내용을 전산에 기록

*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만 해당

● 급여제공관리 흐름





12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3팀

◆ 전산 시스템 구성

- (경로)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관포털) → '급여제공관리'
- (메뉴) 수급자관리, 급여제공계획, 급여제공내용, 프로그램관리, 종사자근무관리, 기초관리, 서명요청관리





12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3팀

◆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이해



◆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

시기	내용
'25.6월	· 급여제공관리 전산 운영 시작
'26.1월	·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
'26.12월 ~	· 전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산 운영 확대 예정



1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청구우수기관을
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



13.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 ... 심사관리부 2팀

◆ 추진목적

-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에 대해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여, 타기관의 롤 모델화를 통한 적정 청구 문화 조성

◆ 주요내용

● (선정 및 운영)

- 대상: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 460개소 ... 작년 대비 40개소 확대 운영
- 운영기간: 2026.4.~2027.3. (매년 연 단위 선정)
- 기준: 청구 역량을 갖추면서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
 > 급여비용 적정청구, 환수내역 등 5개 기준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배점 합 상위기관 선정

● (역할 및 인센티브)

- 청구그린기관 증서 수여, 언론보도 등 대국민 홍보
-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홈페이지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

● (기타)

- 선정기간 중 행정처분 확정된 기관은 그린기관 선정 취소
- 취소 시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홈페이지 청구그린기관 표기 제외 등



14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



14. 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… 심사관리부 2팀

◆ 추진목적

- '청구업무 우수자'를 청구상담전문가로 위촉하여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지역밀착형 상담 제공
-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

◆ 주요내용

- (위촉 기준)
 -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
 - 청구 경력 60개월 이상(전체 장기요양기관 근무 월 수)인 경우
 -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경우
- (위촉 방법)
 - (운영센터)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시행, 청구상담전문가 신청 접수 및 추천
 - (지역본부) 선발 위원회 운영, 청구상담전문가 선발 및 관리, 간담회 주관
- (역할 및 인센티브)
 - 청구 관련 문의 시 상담 및 상담내용 전산 등록, 정보공유 등
 - 격려물품 지원, 나눔 자료 매월 제공, 상담활동 기여도 따른 상품권 제공, 우수 청구상담전문가포상
- (청구상담전문가 조회)
 - 급여비용청구 > 청구상담전문가 > 청구상담전문가 조회 > 급여종류 선택 > 지역 선택 > 조회
 - 상담 요청 시 상담요청기관의 명칭, 상담 요청자 성명과 직종 밝힌 후 상담 가능



1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**‘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’
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**



15. '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'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 ... 요양수가부 2팀

◆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해」 상시 학습 콘텐츠 운영

- (목적)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현장 운영 지원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조성
- (대상)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청구담당 종사자 등

◆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
동영상 교육 (‘26년 개정사항 중점)	(기본편) 고시·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별 상세 설명 (심화편) 고시·세부사항 사례별 다빈도 Q&A 위주의 안내
이러닝 교육 (고시·세부사항 전문 해설 중점)	(교육명)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 (구성) 1~8차시 재가·시설급여 제공기준, 9~16차시가산·감액 산정기준
현장 사례별 다빈도 질의·답변 안내(분기별)	현장에서 착오 적용하기 쉽거나 해석이 어려운 사례별 Q&A 안내

◆ 학습자료 게시 위치

- 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



1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부담청구 장기요양기관
신고·포상금제도



16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◆ 추진목적

-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정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
-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로 공익신고 활성화

◆ 주요내용

- 신고 대상
 -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불법·부당행위 일체
- 신고인 유형별 포상금

신고인 유형		최대 포상금
장기요양기관 관련자	피신고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	2억 원
장기요양기관 이용자	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	500만 원
그 밖의 신고인	'장기요양기관 관련자, 장기요양기관 이용자'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	



16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● 신고 방법

- 온라인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모바일 앱(건강보험 25시)

구분	세부경로
인터넷 (노인장기요양보험)	민원서비스 → 포상금제도 안내 →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→ 신고하기(실명/익명 선택)
모바일 앱 (건강보험 25시)	메뉴 → 국민소통·참여 → 신고센터 →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→ 신고 → 신고하기(실명/익명 선택)

※ 익명신고는 인터넷·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,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

※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·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

- 서면: 내방·우편, 공단 지사(운영센터)·지역본부 접수

※ 부득이한 경우,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



16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◆ 주요 부당청구 사례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
 - (방문요양)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 주 5회, 1회당 180분 서비스를 제공했으나, 주 6회, 1회당 240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거짓 청구
 - (방문요양)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, 일수, 횟수를 늘려서 거짓 청구
 - (방문목욕) 방문목욕차량 미이용, 1회 60분 이상 서비스로 월 2회 제공했으나, 월 4회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거짓 청구
 - (공통)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찍은 후 제공한 것으로 거짓 청구
 - (공통)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고 거짓 청구
 - (복지용구)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거나,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급여비용 거짓 청구



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**2026년 신규기관
운영컨설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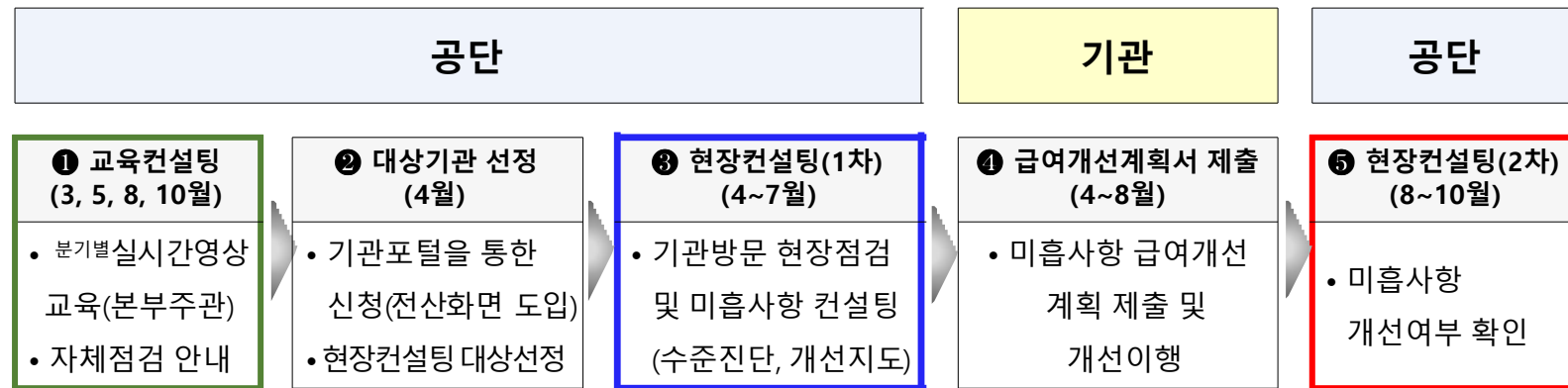


17. 2026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... 요양평가부 4팀

◆ 추진목적

-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한 사전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
 - (배경) 신규기관 개설시점에 따라 최장 4년차에 처음 평가를 받아 서비스 질 사각지대 발생 우려

〈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운영 흐름도 〉



◆ 운영방법

- (교육컨설팅) 네이버밴드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(분기별) 및 실시간 교육(연2회, 평가 Q&A 등)
- (현장컨설팅) 1차 현장컨설팅 → 급여개선계획 제출 및 개선 → 2차 현장 컨설팅(1차 80점 미만)
 - ① (1차 컨설팅) 현장점검
 - ② (급여개선계획) 1차 현장컨설팅 결과 급여개선계획 등록 및 미흡사항 보완, 자체개선 독려
 - ③ (2차 컨설팅) 1차 현장컨설팅 점수 80점 미만 기관 대상 2차 현장 컨설팅 실시



18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



18.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...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팀

◆ 배경 및 목적

- 인구 고령화 등 고령친화용품(복지용구 등) 수요 증가로 사용자 신체 상태·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 선택·사용법 등 관련정보 요구 증가
 -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수요자의 적정제품 선택 및 이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

◆ 주요내용

-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(500여종) 전시·체험프로그램 운영
 - 찾아가는 이동전시체험관 및 온라인 전시체험관 운영



<전시체험관>



<네이버 예약(QR)>



<이동전시체험관>



<온라인 전시체험관(VR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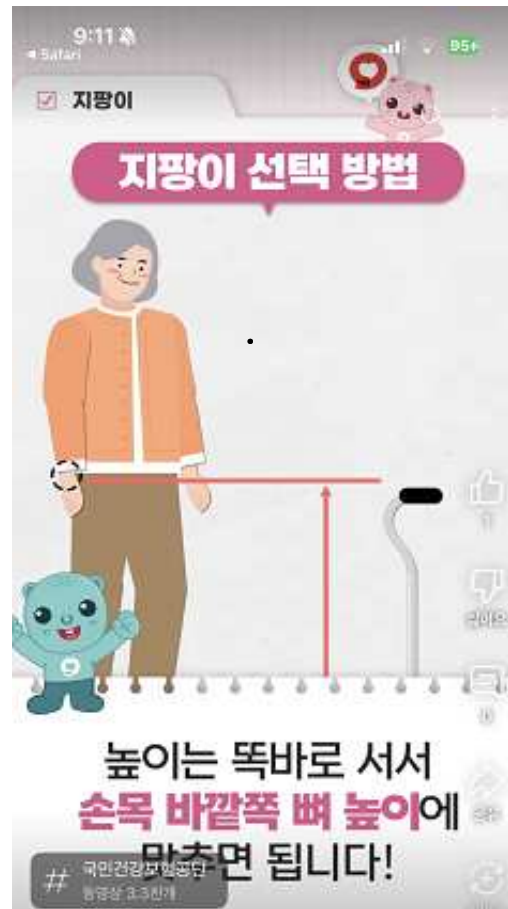


<온라인 전시체험관(QR)>



18.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...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팀

-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 및 사용법 정보 제공(60초 이내의 숏폼 영상)으로 고령자의 건강한 삶 지원
※ 총 16편(목욕리프트, 수동침대 제외)



18.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...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팀



<1. 이동변기>



<2. 목욕의자>



<3. 성인용보행기>



<4. 안전손잡이>



<5. 미끄럼방지용품>



<6. 간이변기>



<7. 지팡이>



<8. 욕창예방방식>

18. 전시체험관 및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...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2팀



<9. 자세변환용구>



<10. 요실금팬티>



<11. 수동휠체어>



<12. 전동침대>



<13. 이동욕조>



<14. 배회감지기>



<15. 욕창예방매트리스>



<16. 경사로>

참고자료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



[참고자료] 노인학대 정의 및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... 기관관리부 4팀

◆ 노인학대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4호

-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◆ 노인학대의 유형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, 제 36조의 9 규정 바탕

신체적 학대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또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
방임
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양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필비,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자기방임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

◆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

-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,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.
-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.
-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-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.
-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건강상태,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노인의 면회나 외출,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.
-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
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